

# 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간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‘각 기관’ 이라 한다.)는 각 기관의 업무 협력과 학술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본원칙)** 각 기관은 이 협약서에 명기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**제3조 (협력의 범위)**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교육 및 연구 분야 인적 교류
2. 학생 교류(대학원생 포함) 및 상호 학점 인정
3. 학술 공동 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
4. 공동 연구 사업 추진
5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
6. 행정, 경영, 관리 등 학문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
7. 창업 분야 관련 필요한 사항
8. 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4조 (시행방법)** 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교의 학칙 및 규정을 따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된다.

제6조 (수정 및 변경)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로 정한다.

제7조 (비밀유지) 각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공개 사항을 상대기관 기관장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 협약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에도 계속 존속한다.

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11월 27일



서울교육대학교  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



서울시립대학교  
UNIVERSITY OF SEOUL

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 
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& TECHNOLOGY

총 장 장 신 호

총 장 원 용 결

총 장 김 동 환

장 신 호

원 용 결

김 동 환